

# 시설공사계약 일반약관

제 1 조(총칙) 주식회사 포스코피엔알(이하 "도급인"이라 한다)와 계약자 \_\_\_\_\_(이하 "수급인"이라 한다)는 제 2 조의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2 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시공물량산출서, 현장설명서), 시설공사 계약 일반약관 및 특별약관(윤리특별약관포함), 특별조건, 입찰유의서, 산출내역서, 또는 도급인이 지정된 컴퓨터 등 정보통신 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로 구성되며, 수급인도 수급인의 협력기업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및 변경시 서면계약서(구두발주금지) 교부를 원칙으로 한다.

② 도급인과 수급인은 공사착공 전 설계도면에 각자 서명후 각 1부 보관한다. 또한 시공중 개정도면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다. 단 간이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록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③ 설계표준 및 일반시방서는 도급인의 전자구매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할 수 한다.

④ 공동수급의 경우, 도급인의 계약서에 첨부하여 전자서명된 공동수급협정서는 공동수급사간 상호 서명날인한 것으로 인정한다

⑤ 이 약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 효력을 가진다.

⑥ 도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기술자료"를 계약문서로 요구할 수 있으며, 기술자료를 요구시 요구목적, 비밀유지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그 내용을 "기술자료 요구서[첨부 2]"에 기재하여 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도급인은 수급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도급인 또는 제 3 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본 약관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수급인의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자료를 의미한다.

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자료로서 수급인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다.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장비 자원, 설계도면,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가.항 또는 나.항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수급인의 정보·자료로서 수급인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⑦ 도급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인에게 원가자료 등 "경영상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도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상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들을 의미한다.

가. 수급인이 목적물 등의 납품을 위해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원가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지급 내역 등)

나. 수급인이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매출 관련 정보(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등)

다. 수급인의 경영전략 관련 정보(제품 개발·생산 계획, 판매 계획, 신규투자 계획 등에 관한 정보 등)

라. 수급인의 영업 관련 정보(거래처 명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납품조건(납품가격을 포함)에 관한 정보 등)

마. 수급인이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제 3 조(채권양도) ① 수급인은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 등)을 제 3 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수급인이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얻어 도급인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대금의 일부를 선지급 받은 경우 정산 완료전에 채권양도 할 수 없다.

제 4 조(계약보증금) ①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전까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도급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보증서 또는 이행증권으로 납부한때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증서 또는 이행증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2. 국채 또는 지방채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③ 수급인은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 5 조(공사의 착공) 수급인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도급인에게 착공신고서와 공사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 조(야간작업) ① 계약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공사가 긴급을 요하여 도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급인의 승인없이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② 도급인의 승인을 얻어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수급인은 야간작업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으며 야간작업을 실시함으로써 공작물 또는 제 3 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다만, 도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야간작업을 지시했을 때에는 야간작업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도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 7 조(공사재료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하며, 설계서에 명확히 지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사용전에 전부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③ 검사의 결과 불합격품으로 결정된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공사감독원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도급인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이 불합격한 재료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품으로 대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급인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킬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⑤ 수급인은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에는 공사감독원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⑥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구하는 것은 공사감독원의 참여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⑦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원

의 참여없이 시공할 수 없다.

⑧ 수급인이 제 1항 내지 제 7항에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도급인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이나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제 8 조(사급재료 및 대여품) ① 수급인은 계약에 의하여 도급인이 공급하는 사급재료와 대여장비, 기계 등을 도급인과 수급인이 서로 협의한 일시와 장소에서 인수하여야 하며 인수후의 운송비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 1항에 의하여 공급된 사급재료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있으며 도급인의 승인없이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급인은 사급재료 및 대여품을 인수한 후 파손, 멸실,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도급인의 선택에 따라 대품충당 또는 공정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④ 도급인이 공급한 재료와 장비, 기계 등은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잉여분은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⑤ 사급재료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도급인의 서면승인을 얻어 자기보유의 재료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과 합의된 일시와 장소에서 현품으로 지급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불 지급시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⑥ 수급인은 사급재료 및 대여품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고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도급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⑦ 도급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급재료 또는 대여품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도급인이 공급한 사급재료에서 발생한 스크랩은 도급인의 소유로 준공전 도급인이 지정한 장소에 반납하거나 명세서에 표기된 스크랩금액을 준공기성지급 전까지 도급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 9 조(공사현장대리인) ①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소지자를 공사현장대리인으로 지명하여 도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현장대리인은 2개이상(계약단위)의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동일 목적물의 완성을 2개이상으로 분할 계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0 조(공사감독원) ① 도급인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감독하거나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하는 자(이하 '공사감독원'이라 한다)를 선임할 수 있다.

1. 시공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계약이행에 있어서 수급인에 대한 지시, 승낙 또는 협의하는 일
3.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4.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5. 기타 공사감독에 관하여 도급인이 위임하는 일
6. 공사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접수 및 관리하는 일

② 공사감독원은 수급인의 의무와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

연장 등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다.

제 11 조(설계변경, 중지 등) ① 설계서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는 수급인은 즉시 이 사실을 도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설계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도급인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공을 중지시키거나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요구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변경,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할 때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설계금액 대비 계약금액의 비율.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다만 도급인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제 2 항의 경우외에 수급인이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⑤ 계약조건의 변경으로 공사물량의 증감없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⑥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안전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여 계상한다.

⑦ 계약체결 60 일후 공급원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체결시점 기준가격대비 총 계약금액의 5/100 증감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 신청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30 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공급원가란 재료비, 노무비, 경비(공공요금, 운임 등)를 포함한 금액을 의미한다.

수급인은 상기의 사유로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수급인의 협력기업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방식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또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시 정한 계약금액을 부당하게 감액할수 없다.

제 12 조(응급조치) ① 수급인은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조치후 그 결과를 공사감독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원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 할 때에는 수급인에게 응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급인은 제 3 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 1항 및 제 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도급인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 11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3 조(지체상금) ① 수급인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간내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체상금의 상한액은 지체상금 계산대상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도급인은 제 1 항의 경우에 제 15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에서 공제한다.

③ 도급인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한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수급인이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사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도급인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었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수급인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도급인은 동조 제 1 항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 또는 기타 예치금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 14 조(검사) ① 수급인은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도급인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도급인은 제 1 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문서 및 준공신고서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수급인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 15 조(인수) ① 도급인은 제 14 조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공사의 완성을 확인한 후 수급인이 서면으로 인도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공사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 1 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공사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공사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없이 당해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기성부분에 대하여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

제 16 조(일반적 손해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① 수급인은 계약이행 중 공사목적물 및 제 3 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또는 사급재료 및 대여품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급인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도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급인이 제 2 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과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 16 조의 2 (배상책임)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급인의 건설공정 또는 조업상 차질이 초래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따른 도급인의 손해를 배상을 하여야 한다. 여기서 도급인의 손해는 제 13 조(지체상금)에 따른 손해액과 별도로 한다.

제 17 조(하자보수 보증금) ① 수급인은 준공검사를 필한 날로부터 계약서에서 정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당해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도급인에게

현금 또는 제 4 조 제 2 항 각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도급인으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도급인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하여 보수 또는 수리할 수 있다.

④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후 수급인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⑤ 타인이 시공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수급인은 전차공사 시공부분에 대하여도 계속 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보수 또는 수리 등을 긴급히 하여야 할 필요가 발생하여 수급인에게 보수 또는 수리를 요청할 여가가 없거나 또는 수급인이 즉시 그러한 공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도급인은 일방적으로 수급인의 부담으로 제 3 자에게 시공시킬 수 있다.

⑦ 보증기간 경과 이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 하자보상을 요구하지 않으며 해당 공급사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다. 다만, 도급인의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하자 보수 보증기간이 만료한 경우라도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수급인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8 조(허가 및 기타부담) ①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 3 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하거나 정부의 허가, 신고 등의 부담을 수반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인이 계약체결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이후 수급인이 결정한 특정 시공방법에 대해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수급인과 협의를 해야 하며,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급인의 일방적인 요구로 수급인의 이러한 책임을 가중시킨 경우에는 그 가중된 부분은 도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계약체결시 이미 지정된 시공방법에 대해 도급인이 계약체결 이후 변경을 요구하거나, 계약체결 시 시공방법이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계약체결 이후 수급인이 결정한 특정 시공방법에 대해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과 협의를 해야 하며,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급인이 일방적으로 시공방법을 변경할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제반 편의를 제공하고, 그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지급한다.

제 19 조(대가의 지급) ① 수급인은 공사를 완성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을 청구하며 도급인은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다만,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기간내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협의하여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②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는 수급인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며 계약 후 1 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월단위로 지급하고 계약금액의 90%까지 지급한다. 단, 계상된 재료비의 5% 이상이 소요되었을 경우 수급인의 요청에 의거 1 개월 이내라도 지급할 수 있다

③ 기성 및 공사를 완성한 후의 대가의 지급시 도급인은 수급인이 작성한 하도급대금지불 내역확인서를 확인하여 노임지불 등에 이상이 없을 경우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수급인의 서면신청에 의거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 20 조(공사의 하도급) ①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를 제 3 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의 선정,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하도급대가의 지급에 있어 관계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한다.

② 도급인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하거나 이를 통보받은 때에 하도급 계약금액이 원도급 금액 대비 현저하게 저가하도급 되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급인에게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도급인은 승인한 하도급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당해 하수급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수급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체결되어진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전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식당게시판, 현장 입구 등)에 게시판을 설치하여 다음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 도급인과 수급인이 설치한 체불임금 신고센터 Web-site 및 신고절차 등 제반사항
-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금금, 기성금 또는 준공금 등의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

제 21 조(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①도급인은 수급인이 제 2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 계약중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한다.

② 도급인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한 경우에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 21 조의 2(지급보증서) ① 수급인은 하도급 계약 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급하여 하도급 업체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도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1 건의 하도급 계약금액이 1 천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 만원 이하인 경우(동일업체와 2 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1 건의 계약금액으로 함)에는 보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은 준공시 도급인에게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출한 증빙에 근거하여 계약시 계상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 범위 내에서 정산하여야 한다.

제 22 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도급인은 공사물의 인수전에 기성공작물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경우 수급인과 부가공사의 계약자는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 23 조(공사현장근로자) 수급인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공사현장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만을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3 조의 2(수급인의 재무상태 통지의무) ① 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1 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그 즉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본 계약기간 중 워크아웃 신청, 회생 또는 파산 절차 개시 신청 등을 검토하는 경우

2. 수급인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또는 강제집행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수급인의 부채비율 등 재무상황이 상당히 악화되어 계약이행에 대한 장애발생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수급인은 전항의 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 그 통지 후 지체없이 수급인의 계약이행을 보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추가담보 제공 기타 수급인의 계약이행에 대한 장애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제출하여 도급인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 동 증빙자료의 제출을 면제하여 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4 조(도급인의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도급인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이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일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준공기일내에 공사를 완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수급인이 제 23 조 2 제 1 항의 통지의무를 위반하거나, 동조 제 2 항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수급인이 워크아웃 신청, 회생 또는 파산 절차 개시 신청 등을 하거나 수급인에 대한 지급정지, 강제 집행 개시, 영업정지, 회생 또는 파산 절차 개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제 4 호의 사유 또는 가압류, 가처분, 수급인의 상당히 악화된 재무상황, 기타 수급인의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 발생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의 계약이행에 장애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6. 제 13 조 1 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지체상금 상한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직, 간접으로 환경보전관련법령에 위배되는 행위가 관련기관에서 인정될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도급인은 제 1 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도급인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기성부분 검사를 필한 공사를 기성부분으로서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제 24 조 2(수급인 성과 불량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도급인은 수급인의 납기, 품질, 신용 등에 대한 연간 성과 분석 결과 불량인 경우 해당 수급인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다.

제 24 조 3(수급인 계약불이행 또는 부정당행위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도급인은 [첨부 1]에서 정하는 계약불이행 또는 부정당행위를 한 수급인(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 포함)에 대해 발생 즉시 해당 계약건을 해지하고 계약불이행 공급사는 해당 SG 을, 부정당행위 공급사는 모든 SG 의 입찰대상 공급사로서의 자격을 제재기간 동안 취소한다.

또한 금품제공 등 비윤리행위 직접 행위자 및 관련자에 대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도급인 회사 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시킨 자에 대하여 전항을 적용한다. 다만, 그 행위자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 1 항에 따른 제재대상에는 아래 각 호와 같이 해당 수급인과 사실상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자도 포함된다.

1. 본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회사·법인 기타 단체의 대표자 및 그 원인을 직접



야기시킨 단체의 구성원(다만, 대표자가 여러명 있는 경우로 당해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본조에 의하여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법인·기타 단체

3. 본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자가 회사·법인 기타 단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법인·기타 단체

④ 도급인이 수급인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스코그룹사와 상호 교환할 수 있다.

1. 업체(상호)명·주소·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등)·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관계 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번호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⑤ 수급인이 포스코그룹사에서 제 1 항 내지 이에 준하는 계약불이행 또는 부정당행위로 인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은 경우 도급인은 공급사 평가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⑥ 통합구매 참여그룹사가 계약불이행 또는 부정당행위를 이유로 해당 소싱그룹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수급인은 통합구매조직에서 수행하는 해당 소싱그룹의 입찰에 참여 할 수 없다.

⑦ 수급인이 계약체결 이후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제 25 조(수급인의 계약해제 또는 해지) 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의 100 분의 4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정지 기간이 공기의 100 분의 50 을 초과했을 경우

제 26 조(계약해제 또는 해지시의 처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수급인은 다음 각호 1 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의 해제 및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해약통지를 받은 부분에 대한 공사는 지체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기구들을 공사장으로부터 철수하여야 한다.

3.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사급재료의 잔여분과 대여품은 지체없이 도급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4. 도급인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자료, 정보 및 편의를 도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 27 조 1(영업비밀 보호 및 기술지식의 이용) ① 수급인은 도급인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알거나 취득하게 된 도급인의 영업비밀을 도급인의 사전 서면승인이 없는 한, 계약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급인은 그 임직원, 하도급사 및 그 임직원 등으로 하여금 도급인의 영업비밀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관련 임직원, 하도급사 및 그 임직원 등으로부터 도급인에 대한 영업비밀유지약정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③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도급인의 영업비밀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안점검을 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도급인은 전항의 점검결과 등으로 수급인의 도급인의 영업비밀 관리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이 고의나 과실로 제 1항부터 제 4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수급인은 그로 인해 도급인이 입게 되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본 계약에서 영업비밀 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제품의 연구개발 계획, 보고서 및 일지, 실험데이터, 연구성과 분석자료 등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
2. 제품의 설계방법, 사양, 설계도면, 제조공정, 제조 장치, 제조와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 등 기술상 정보
3. 기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기술, 영업 또는 경영상의 정보

⑦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도급인은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도급인은 수급인의 서면승인 없이 본 계약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해당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할 경우 도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에게 그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 2 조 제 6 항을 준용한다.

제 27 조 2(면책조항) 수급인은 계약목적물과 관련하여 당사자 중 일방과 제 3 자 사이에 특허, 의장, 실용신안, 저작권 및 상표 등 지적 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체적인 상황을 도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상기 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급인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의 분쟁으로 수급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27 조 3(지적재산권) ① 계약목적물이 기본적으로 도급인의 독창적 기술이나 디자인 등이 반영된 사양서, 설계도면 등에 근거하여 제작되는 것인 경우, 계약목적물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컴퓨터 프로그램, 영업비밀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은 원칙적으로 도급인의 소유로 한다. 다만, 수급인이 보유 또는 개발한 기술이나 디자인 등이 계약물품의 제작에 사용됨으로써 계약물품 관련 지적재산권이 계약물품에 적용된 도급인의 기술이나 디자인보다 진보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이하 “개량 지적재산권”이라고 한다. 단순히 도급인의 설계도면 등에 따라 단순 제작하는 과정에서 수급인의 기술 등이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양 당사자는 “개량 지적재산권”에 대한 양 당사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개량 지적재산권”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별도로 협의하여야 한다. 이때 도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계약물품에 적용된 수급인의 기술이나 디자인 등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 2 조 제 6 항을 준용한다

② 전항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컴퓨터 프로그램, 영업비밀 등 지적재산권에 기초하여, 계약 기간 중 또는 계약이 종료되거나 만료된 날로부터 3 년 이내에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임직원이 당해 지적재산권을 개량한 경우, 개량된 지적재산권은 도급인에게 귀속되며, 그 대가로서 도급인은 수급인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발명에 준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제 1, 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목적물의 제작, 설치, 시운전 등에 관련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동으로 기술적 사항이나 디자인을 개발 또는 개선시키는 경우, 그러한 기술적 사항이나 디자인 등에 대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은 상호 협의하여 그 개발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권리화 여부 및 권리귀속 주체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 27 조 4(하도급사 기술유출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① 수급인이 계약사항 이행을 위해 도급인에게 공급하는

물품의 설계, 제조 등에 관하여 하도급을 줄 경우, 수급인은 하도급사로 하여금 도급인의 영업비밀을 지킬 것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당해 하도급사 및 그 관련 임직원으로부터 도급인에 대한 영업비밀유지 약정서를 징구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고의나 과실로 제 1 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수급인은 그로 인해 도급인이 입게 되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28 조(제법령 및 제규정의 준수) ① 수급인은 건설업(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 포함) 및 하도급 관련법령, 안전 및 환경보전관리 관련법령, 보세건설장 운영에 따른 관세 관련법령, 발굴물처리에 따른 관련법령 등 본공사의 시공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관련된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본 계약이행과 관련된 도급인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도급인은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윤리규범을 준수하며, 수급인은 도급인의 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윤리규범 준수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급인은 재발방지를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도급인은 수급인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나 하도급 거래관련 분쟁조정 협의 및 계약내용에 대한 이의제기 등의 이유로 거래단절 및 불합리한 제재조치 등 수급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보복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29 조(안전관리) ① 수급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가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도급인은 계약금액에 안전관리비 상당액을 계상한 후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비 사용 증빙을 확인하고 정산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있어 도급인의 종업원 또는 제 3 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하여 상해 또는 피해를 야기케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고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단,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④ 수급인은 '안전보건관리 조직(책임자 실명 표기)'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필히 제출해야 하며, 도급인은 수급인이 계약시 제시한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계획서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첨부에서 정하는 계약불이행 기준에 따라 해당 SG의 입찰대상 공급사로서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도급인은 공사에 투입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련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고, 필요시 안전규정 위반자에 대해선 안전 책임자와 함께 출입정지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29 조의 2(산재보험·국민연금보험 등) ① 수급인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준공시 도급인에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출한 납입확인서에 근거하여 계약시 계상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 범위 내에서 정산하여야 한다.

③ 도급인은 필요한 경우 수급인으로 하여금 기타보험에 부보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제 30 조(퇴직공제부금) ① 수급인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그 공제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퇴직 공제부금을 공사진도에 따른 기성금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준공시 정산한다. 단, 차수 공사의 경우 차수별로 정산하거나, 차수별로 중간정산후 최종 발주차수 준공시 최종정산한다.
- ③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출한 납입확인서에 근거하여 계약시 계상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 범위 내에서 정산하며 그 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 ④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퇴직공제부금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수급인이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그 정당한 사유를 명기하여 퇴직공제부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31 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 1 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 32 조(보증금의 처리) ① 제 24 조 각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지체없이 수급인에게 반환한다.

③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았으나 도급인에게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지급할 계약대금 또는 기타 미지급금 등에서 이를 공제 수납할 수 있다. 하자보수보증금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다.

④ 제 3 항의 계약보증금 납부 면제란 계약보증에 대한 책임의 면제가 아니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서 제출의 면제를 의미한다.

제 33 조 (준공보고서 제출) ① 수급인은 계약기간 종료일 3일 이전에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사업에 대하여 연속하여 공사를 수행할 경우 최종 공사계약의 계약기간 종료일 3일 이전에 준공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때에도 이전의 공사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계약후 30일 이내에 준공보고서 작성계획(작성내용, 중간보고일정 포함)을 제출하여 도급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4 조(필수직영인원) ① 수급인은 현장대리인(현장소장), 안전관리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직영인원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시직영인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계약이후 공사기간중 부득이한 사유로 직영인원을 교체시에는 도급인의 승인을 득하여야한다.

③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 ①, ② 항을 위반시에는 일괄하도급으로 간주하여 차기 입찰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 35 조(하도급참여 제한) 도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윤리실천 위반 등 부정당한 행위로 5년 이상의 제재 또는 5년 미만의 제재를 3년 이내 2회 이상 받은 업체에 대해 제재기간 동안 도급인으로 부터 수주한 공사의 하수급인으로서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 36 조(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수급인은 건설노조 파업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도급인이 공기연장을 승인할 경우 공기연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 37 조(특약사항)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급인” 과 “수급인” 이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 10. 08 부터 개정,시행한다.

posco  
PNR

[첨부 1] 계약불이행 또는 부정당행위시 제재 기준

구분	심사항목	제재기간
계약불이행	○ 낙찰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1년
	○ 계약자의 부도 또는 폐업으로 정상적 계약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2년
	○ 불합격품에 대한 대체납품 요구에 불응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년
	○ 30일 이상 지체건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1년
	○ 낙찰 후 고의성은 없으나, 사양확인 등의 과실로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한 자(단순 오투찰은 제외)	6개월
	○ 계약체결 후 소재수급 곤란 등 고의성이 없는 과실로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소싱그룹만 3개월
	○ 계약의 이행 또는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POSCO 사업장 내에서 재해를 발생 시킨 자 - 아래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1년
	- 일반(치료기간 4일 이상)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 경미(치료기간 4일 미만)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6개월 3개월
	-도급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당초 계약내용에 의한 자재규격서, 도면 등과 상이하게 물품을 제작하여 설비사고를 유발한 경우	1년
	-기타 계약불이행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제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최고 1년
부정당행위	○ 고의적으로 품질이 낮은 자재를 납품하거나 수량을 속여 납품한 경우	2년
	○ 정당한 이유없이 회사자산을 무단반출한 경우	2년
	○ 악의성 투서나 유언비어를 유포한 경우	2년
	○부당하도급을 한 경우 (물품구매는 제재대상 제외) - 1차 위반 - 2차 위반	3개월 2년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 입찰 담합을 주도한 경우 - 입찰 담합에 단순 가담한 경우	3년 1년
	○ 타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1년
	○ 타사의 계약에 상호를 빌려준 경우	6개월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부정 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2년
	○ 도급인의 입찰,협상,검수등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기타 계약이행에 문제를 야기한 경우	1년
	○ 부정당공급사로 부터 물품을 구매,납품하여 시정권고를 받은후 시정권고 내용을 불이행한 경우	1년
	○ 비윤리행위(윤리특별약관 제 5 조)시 - 1백만원 이상의 금전,금품을 제공한 경우 - 1백만원 미만의 금전,금품을 제공한 경우 -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향응,접대,편의를 제공한 경우	5년 3년 1년
	- 중고품을 납품하거나 제조 Maker 를 상이하게 납품한 경우 :2년	2년
	- 계약의 체결, 이행 등과 관련한 '공급사 행동규범' 위반으로 중대한 사회적 비난을 초래한 경우 : 2년	2년

- |   |               |
|---|---------------|
| ○ 청탁을 통해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br>- 부적정 거래 성사시<br>- 부적정 거래 미성사시 | 2년이하<br>6개월이하 |
|---|---------------|

posco  
PNR